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구 미 시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동락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기부채납, 30%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
- 나.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2장 :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나. 안) 제3장 :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제8조 ~ 제10조 기부채납의 대상·시기·조건
- 다. 안) 제4장 :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제11조 보상비 등 납입
- 라. 안) 제6장 : 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제14조 ~ 제15조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보상시행 및 정산

라. 안) 제9장 :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제25조 설계·인허가,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의 착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정관리, 사업이행보증금, 구미시장의 감독

마. 안) 제10장 구미시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6조 ~ 제27조 행정적 지원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바. 안) 제11장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제28조 ~ 제31조 위험배분의 원칙,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구미시장의 귀책사유 및 처리,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사. 안) 제12장 : 협약의 종료

- 제32조 ~ 제3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협약해지시의 조치, 해지에 따른 정산

아. 안) 제13장 : 권리의 처분

- 제36조 ~ 제37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

자. 안) 제14장 : 분쟁의 해결

- 제38조 ~ 제40조 분쟁의 해결, 출자지분의 변경, 중재

3. 협약서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구미시는 개발행위 특례적용을 통한 도시공원부지 상의 동락공원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에 관하여 (주)대산비에스를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며,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의 공공성을 상호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주)대산비에스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별표 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제 2 조 (사업비의 부담)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하 “사업비”라고 한다)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②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 ③ “비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④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⑤ “민간공원추진자”라 함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⑥ “협약당사자”라 함은 구미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를 말한다.
- ⑦ 그 밖의 본 사업과 관련된 법적 용어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을 해석할 때 상호 간에 견해가 다르거나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2 장 협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제 5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권리)

- ① 구미시장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이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미시장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의무)

- ① 추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보상액 및 각종 인·허가 부담금 등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민간공원추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 비공원시설의 설치,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협약의 성실히 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구미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제 8 조 (기부채납의 대상)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행위특례로 조성된 도시공원부지 및 공원시설 등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부채납의 시기)

민간공원추진자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토지매수업무(협의매수, 재결에 따른 수용 모두를 포함)에 따라 공원부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구미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법 제21조의2 제12항에 의거 공원시설물 등 시설의 기부채납을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 이하 “특례지침” 이라한다) 5-4-2에 따라 비공원시설의 준공(사용승인)전까지 구미시장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제 10 조 (기부채납의 조건)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을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보상비 등 납입)

- ① (주)대산비에스는 공원부지(지장물 포함)에 대한 사업적정성검토에 따른 사업부지 예상 보상금 5분의 4이상을 본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구미시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구미시는 보상금 예치 후 (주)대산비에스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구미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 완료 후 감정평가 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구미시장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지매입비 예치가 지연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보상협의를 개시된 이후에는 구미시에게 보상협의 중지 또는 이미 납부한 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단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당시 남은 보상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미확정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 12 조 (비공원시설 면적)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 제안한 비공원시설의 면적은 관련기관 협의와 도시계획, 환경성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변동 결과에 따라 변경 협약 체결 시 구미시는 각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심의내용, 변경내용 등을 모두 협약에 반영하여 비공원시설 면적을 확정한다. 단, 사업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도시계획 및 용도 지역 등)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적합성 검토와 인접 용도 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관련절차 심의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 및 사업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본 협약에 임하여야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각 관련 부서와의 협의내용, 변경내용 및 심의내용 등 구미시가 제안하는 의견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구미시는 비공원시설의 사업성이 당초 제안된 면적에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원 이용의 접근성 편의 및 비공원시설 진입로 확보를 위해 신규 혹은 확장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있을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시설 완료 전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완료를 공고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 14 조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 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은 법 제21조의2 제12항에 따라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부지의 토지 등(토지,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한 매수 업무, 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업무 등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를 위한 수탁 또는 대행사 선정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주관하여 구미시와 협의 선정하고, 위탁비용 및 공고료 등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액 부담 후 사업비 정산 시 토지보상비 항목에 포함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인가 전 중앙토지위원회와 원활한 “사업인정” 협의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토지를 취득(또는 사용동의)해야 하며, 구미시장은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보상협의회 구성, 열람공고 등)를 실시계획인가 전에 시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토지취득 미흡 등으로 인한 중앙토지위원회 “사업불인정” 시에도 구미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15 조 (보상시행 및 정산)

- ① 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거 도시공원부지(지장물 포함)를 매입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단,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보상금을 구미시에 청구할 수 있고 구미시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감정평가 후 당초 예치한 금액보다 초과된 보상비에 대하여 추가비용 전체를 부담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보상완료 후 보상비 지출내역 등의 정산결과를 구미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제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간소요에 관한 사항

제 16 조 (행정절차 기간 소요)

구미시는 본 협약 체결에 따른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유관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의 협의사항 및 추가사항이 발생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 8 장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 17 조 (변경사항 협의)

민간공원추진자는 보상가격 감정평가,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설계·인허가 등)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에 따라 공원시설의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가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한 설계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비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실시계획인가)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구미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구미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구미시는 본 협약 및 상호간 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미시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의하여 구미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 시행 책임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있으며 구미시장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⑥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변경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변경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에도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 중 공원의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 ② 불가항력적 사유 혹은 구미시의 귀책, 기타 구미시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구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제1항의 공사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공원시설의 공사주체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되며,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공정계획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정계획 등 공사추진 관련 사항을 구미시에 통보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공원시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간공원추진자는 특별한 사정(토지사용 여건 등)이 없는 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공원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사 착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 중 공원시설의 공사를 우선 착수하여야 한다.
- ⑤ 민간공원추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실시 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공원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미시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 착수 1개월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한 공사감리를 선정하여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미시는 관련법 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감리 지정을 승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와 관련된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지급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구미시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 ④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계획,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민간공원추진자 및 구미시에 제출하고 민간공원추진자는 이에 대해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사감리자는 제25조(구미시의 감독)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로 인한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추가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 ⑧ 민간공원추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공원 행위특례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3 조 (공정관리)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관리 등의 공정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매분기 별로 구미시에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 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 공사의 전체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공정률 대비 90%미만인 경우 부진공정 만 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구미시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공정계획은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원 및 비공원 시설 공사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 관내업체의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 공사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21조 제3항의 공사착공일 (단, 본 협약 제41조에 따라 변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사업비(부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구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미시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납부 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구미시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구미시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민간공원추진자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구미시에 지급한 이행보증금(이자 포함)은 모두 구미시에 귀속되며, 이행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증서에 기한 지급청구권이 구미시에 귀속된다.
- ④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증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구미시에게 추가로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다시 구미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구미시의 감독)

- ① 구미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설시공의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원 시설 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민간공원추진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공사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10일 이내) 구미시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공사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에 본 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민간공원추진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구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 결과, 본 공사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구미시가 판단할 경우, 구미시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구미시의 감독·조사(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등 포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민간공원추진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제 10 장 구미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6 조 (행정적 지원 등)

- 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비공원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포함) 절차 등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며, 구미시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 절차에 대한 민간공원추진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 ③ 구미시장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며,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치금액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감정평가 후 당초 예치한 금액보다 추가된 비용 및 보상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제 27 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도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
- ②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과 관련된 사업지 인근의 기반시설 개설 및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자지정이 필요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실시계획과 관련한 필요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미시장은 공원시설사업 완료 후 민간공원추진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원해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 ④ 공원시설사업 완료 이전에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구미시장은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한다.

제 11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우선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9조, 제30조에 따라 분담기준을 정한다.

제 29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1.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해 회생, 파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금융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민간공원추진자가 해산 혹은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관된 예치금이 반환되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4. 민간공원추진자가 이 사업의 사업비 등 조달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대출계약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등이 발생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5. 본 협약체결 후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보상 목적 감정평가에 의거 증액된 비용의 납부를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인가 후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8. 민간공원추진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협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구미시가 판단한 경우
9. 본 협약 제2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 본 협약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간공원추진자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본 건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구미시장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손실을 입더라도, 구미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구미시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본다.

1.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구미시가 본 사업을 취소한 경우

2. 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비공원시설의 사업 승인 포함) 협의를 포함한 행정처리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구미시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착수시기의 연기 혹은 공사기간 연장을 구미시에 요청할 수 있고, 구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 ③ 구미시는 제1항 사유로 인하여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 31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①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에 대한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2. 전쟁 또는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4. 폭동, 테러
 5. 본 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관련 정책의 변경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② 사업기간 중 제1항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착수가 연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구미시에 다시 공사착수 혹은 공사가 진행되는 데에 소요된 기간 만큼 연기 혹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사유 치유 및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12 장 협약의 종료

제 32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사업의 완료시점은 다음 각 호가 모두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1. 공원부지 및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
2. 본 협약 제13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기부채납 완료
3.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원해제) 변경 완료

제 33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구미시는 제29조에 정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공원추진자 지정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제30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미시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 31조에 정한 사유 내지 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 의거하여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협약해지시의 조치)

- ①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구미시에게 제공 및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이 해지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구미시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고, 구미시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5 조 (해지에 따른 정산)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원의 정산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 정산금을 산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제 13 장 권리의 처분

제 3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구미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구미시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비공원시설 부지 및 비공원시설 등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투자금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다.

제 37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

구미시장은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등으로 민간공원추진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민간공원추진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장 분쟁의 해결

제 38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40조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제 39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구미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사업완료시까지 대표이사를 개임할 수 없다. 다만 구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0 조 (중 재)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② 중재가 불성립되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5 장 기타 사항

제 41 조 (협약의 변경 등)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협약당사자는 향후 감정평가 및 보상, 각종 심의, 관련기관 협의 등에서 나온 조건을 확정하여 사업계획 변경 시 협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변경 협약은 일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③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구미시장은 사업비 등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제 42 조 (예치금의 성격)

구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예치한 예치금을 PF자금 대출시까지 세입예산 계정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가지는 예치금반환채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할 수 있다.

제 43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제 44 조 (일부 무효)

본 협약 규정의 위법, 무효 혹은 집행 불가능은 그 규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5 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시부터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 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누구에게도 위 제1항 사항을 제공할 수 없다, 단,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 이행 및 본 협약상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여 상대방이 그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의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회계법인, 시공사
 3.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4. 기타 구미시가 인정하는 사업 관련기관

제 46 조 (통지)

- ① 각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모사전송, 전자메일, 기타 매개체로 인한 통지는 그 통지의 수취 확인에 의해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상 통지 기타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한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에 대한 통지
 - 가.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나. 담당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 다. 전화 : 054)480-5562
 - 라. 팩스 : 054)480-5559
 2. (주)대산비에스에 대한 통지
 - 가.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706호(우동, 벽산이센텀글래스원2차)
 - 나. 전화 : 051)701-0019
 - 다. 팩스 : 051)704-5005

- ③ 협약당사자는 제2항 각 호에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47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 후 체결한다.
-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인증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한다.

제 48 조 (이의제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49 조 (보험가입)

-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별지2] 보험가입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공원시설의 공사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구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구미시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간공원추진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구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구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년 01월 일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송정동)

구미시장 장 세 용 (인)

(주)대산비에스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706호
(우동, 벽산이센텀글래스원2차)

대표이사 임 성 기 (인)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1. 사업현황

- 사 업 명 : 구미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구미시 임수동 532번지 일원
- 토지면적 : 총107,242㎡ 공원시설 : 77,791.72㎡ 비공원시설 : 29,450.28㎡

2. 공원시설사업

- 토지면적 : 77,791.72㎡
- 주요시설물 : 30,860.46㎡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총 계		77,791.72	1,586.88	
공원 이용 시설	소계	30,860.46		
	도로 및 광장	20,645.48		
	조경시설	2,293.66		미소원, 향기원, 야생화원, 갤러리가든
	휴양시설	343.46		쌈지쉼터, 강마루쉼터, 자락쉼터
	유희시설	1,595.59		모험놀이터, 통합놀이터
	운동시설	222.61		체력단련장
	교양시설	1,676.00	1,586.88	구미 시립미술관
	편익시설	4,083.66		주차장
	관리시설			공원안내판 등
녹지		46,931.26		

3. 비공원시설사업

- 토지면적 : 29,450.28㎡
- 주요시설물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등
 - 기타 주요 비공원 시설물
- 비공원시설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안)

구분	내용	비고
면적	29,450.28㎡	공동주택부지 : 21,533.28㎡ 경관녹지 : 4,032㎡ 도로용지 : 3,884.72㎡
건축물의 용도	상가시설 및 공동주택	
건폐율	73%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197.58%	법정:1,000%이하/인센티브적용 1,200%이하)
높이	지하 7층-지상65층	
건축물의 규모	상가시설(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공동주택 1,344세대	
분양 Type	85㎡, 111㎡, 136㎡	
주요 시설물		
조경면적	15%	

※ 협약체결 후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계부처(서)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공원 및 비공원시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정액 (이익률)	비 고
매출	아파트 분양	687,881,600	
	상가 분양	450,170,300	
	매출 계	1,138,051,900	
투입	토지매입비	17,158,720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토지비 포함
	공공주택 직접공사비	513,323,800	표준건축비 적용
	공공주택 설계·감리비	27,370,867	표준단가 적용
	간접공사비	197,358,356	표준건축비 적용
	공원조성비	36,129,000	공원조성 표준단가 적용, 공원시설물 사례 참조
	판매·부대비	126,227,929	분양경비, 인허가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포함
	금융비용	61,750,000	
	기타(예비비)	31,179,560	총 투입액의 3%
		60,000,000	교량공사비 600억, 구미시 공동시행
	투입 계	1,070,498,232	
경상이익(수익율)		67,553,668 (5.94%)	

※ 협약체결 후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계부처(서)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공원 및 비공원시설 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보 험 가 입

항 목	가입보험 종류 및 내용
보험명	1. 재물손해보험 2. 예정이익상실보험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내용	1. 재물손해보험 - 전공사 범위에서의 시공 중 사고 - 공사용 장비에 대한 사고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 목적물의 준공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예정이익의 상실 보장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적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보장
보험기간	공사기간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1조의 2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

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기부채납의 시기
 -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민간제안자가 모든 비용 부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구미시 사업비 부담 없음

4. 작 성 자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지방시설주사보 박효주(054-480-5562)

소관 실 · 과		공원녹지과
입 안 자	과 장	장 재 일
	담 당	정 태 홍
	담 당 자	박 효 주 (480-5562)